본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고객님에게 제공됩니다.

은 행 용

본인확인자	팀 원	팀 장	부점장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기한연장 겸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채무자)	성 명	(인)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 소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 소				

대출일자		계좌번호		현재 대출금액	

귀 은행의 본인에 대한 상기 대출금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해당 사항만 기재)**

제1조 기한연장

기한연장	▣ 연장 후 만기일 : 년 월 일까지	대 출 이자율	☐ 변동금리	기본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 + ()% ☐ 기타 :
				우대금리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		☐ 연 ()%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위의 금리는 제6조의 우대금리 연 ()%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제2조 조건변경

구 분	현 재 조 건	변경 후 조건	
① 대출기간	☐ 개월	☐ 년 월 일까지 (거치기간 개월)	
② 금리재산정주기	매 ()개월	매 ()개월	
③ 대출이자율	금리종류 ☐ 프라임레이트 ☐ MBR(신기준금리) ☐ 내부고시금리 ☐ 금융채 연계 ☐ 변동기준금리 ☐ 고시기준금리 ☐ MOR ☐ 신규취급액기준/신 잔액기준/잔액기준COFIX ☐ 기타 현재 적용금리 ()% ※ 당초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기본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우대금리	조건변경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④ 상 환 방 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할부금고정 ☐ 고객원금지정()만원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할부금고정 ☐ 고객원금지정()만원	
⑤ 약정 납입일	매월 ()일	매월 ()일	
⑥ 보증인교체·추가			
⑦ 담보물 변경			
⑧ 기 타 조 건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위한 경과기간은 당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제4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조 및 제2조의 「금리종류」가 「MOR」 또는 「COFIX」인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대출이자율이 적용 및 변경됩니다. 제1조 및 제2조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로 대출실행일에 제2항의 사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 및 제2조의 「MOR」 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 「MOR」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 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 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와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 입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 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대출만료일 이내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대출만료일 이후 :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④ 적용이율은 만기 전 기한연장 시(은행 승인일 기준)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적용]. 다만, '만기 후 기한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한도증액 또는 조건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승인일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3%를 더하여 결정되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15%.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금 상환방법

①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② 분할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2.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2조 제4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① 제1조 및 제2조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내에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대항목		우대조건	우대금리
금리우대항목(Ⅰ)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3개월 이용실적 (　　)원 이상	연(　　)%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2건 이상 이체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우대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당타행을 통해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잔액 (　　)원 이상 유지실적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 (　　)	연(　　)%
금리우대항목(Ⅱ)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Ⅳ)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 이후(　　)일 또는 (　　)개월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② 금리우대항목(Ⅰ)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社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30만원 이상	연0.10%
60만원 이상	연0.20%
90만원 이상	연0.30%

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에는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 실적산정기간 최종 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社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 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자동이체 실적우대 :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 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으로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에 (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다.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 우대의 경우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4. 예금/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일기준(전자금융의 경우 전일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5.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Ⅳ)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제8조 기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고객님에게 제공됩니다.

고 객 용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기한연장 겸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채무자)	성 명	(인)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 소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 소				

대출일자		계좌번호		현재 대출금액	

귀 은행의 본인에 대한 상기 대출금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해당 사항만 기재)**

제1조 기한연장

기한연장	▣ 연장 후 만기일 : 년 월 일까지	대 출 이자율	☐ 변동금리	기본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 + ()% ☐ 기타 :
				우대금리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		☐ 연 ()%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위의 금리는 제6조의 우대금리 연 ()%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제2조 조건변경

구 분	현 재 조 건	변경 후 조건	
① 대출기간	☐ 개월	☐ 년 월 일까지 (거치기간 개월)	
② 금리재산정주기	매 ()개월	매 ()개월	
③ 대출이자율	금리종류 ☐ 프라임레이트 ☐ MBR(신기준금리) ☐ 내부고시금리 ☐ 금융채 연계 ☐ 변동기준금리 ☐ 고시기준금리 ☐ MOR ☐ 신규취급액기준/신 잔액기준/잔액기준COFIX ☐ 기타 현재 적용금리 ()% ※ 당초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기본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우대금리	조건변경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이후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④ 상 환 방 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할부금고정 ☐ 고객원금지정()만원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할부금고정 ☐ 고객원금지정()만원	
⑤ 약정 납입일	매월 ()일	매월 ()일	
⑥ 보증인교체·추가			
⑦ 담보물 변경			
⑧ 기 타 조 건			

KB 국민은행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위한 경과기간은 당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제4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조 및 제2조의 「금리종류」가 「MOR」 또는 「COFIX」인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대출이자율이 적용 및 변경됩니다. 제1조 및 제2조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로 대출실행일에 제2항의 사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 및 제2조의 「MOR」 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 「MOR」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 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 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와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 입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 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대출만료일 이내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대출만료일 이후 :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④ 적용이율은 만기 전 기한연장 시(은행 승인일 기준)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적용]. 다만, '만기 후 기한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한도증액 또는 조건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승인일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3%를 더하여 결정되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15%.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금 상환방법

①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② 분할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2.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2조 제4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① 제1조 및 제2조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내에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대항목		우대조건	우대금리
금리우대항목(Ⅰ)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3개월 이용실적 (　　)원 이상	연(　　)%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2건 이상 이체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우대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당타행을 통해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잔액 (　　)원 이상 유지실적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 (　　)	연(　　)%
금리우대항목(Ⅱ)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Ⅳ)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 이후(　　)일 또는 (　　)개월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② 금리우대항목(Ⅰ)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KB국민카드」社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30만원 이상	연0.10%
60만원 이상	연0.20%
90만원 이상	연0.30%

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에는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 실적산정기간 최종 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社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 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자동이체 실적우대 :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 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으로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에 (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다.「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 우대의 경우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4. 예금/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일기준(전자금융의 경우 전일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5.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Ⅳ)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제8조 기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